

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6차 회의

보고일자	2026. 6. 11.	보고 사항
공개여부	공개	

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6~7월 활동계획

제 출 자	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
제출일자	2026. 6. 11.

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6~7월 활동계획(안)

□ 추진경과
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 : '26.4.9 (제67차 본위원회)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 : '26.4.23, 국립고궁박물관(온라인 병행)
- 권역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: '26.5.7.~5.30, 8회 실시(총 351명 참석)
 - 토의 및 숙의에 대한 개념·방식·절차 등에 대해 안내, 지역별 소그룹으로 모여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공유 등 소속감 고취
 - 국민참여위원의 다양한 직능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에 OT 개최, 평일 참석이 어려운 위원 대상 주말 OT 진행

< 권역별 오리엔테이션 개최 일시 >

	권역	일시		권역	일시
1	강원·제주	5.7.(목) 19:30~21:00	5	대구·경북·울산	5.21.(목) 19:30~21:00
2	경기	5.11.(월) 19:30~21:00	6	충남·충북·대전·세종	5.22.(금) 19:30~21:00
3	서울·인천	5.18.(월) 19:30~21:00	7	전남·광주·전북	5.26.(화) 19:30~21:00
4	부산·경남	5.20.(수) 19:30~21:00	8	권역 무관	5.30.(토) 10:00~12:00

□ 6월 활동계획(안)

- (배경)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주요한 시대적 변화 속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
- (활동주제(안)) “AI시대, 우리 교육의 방향” ※ 세부질문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
 - (세부질문1, AI시대의 삶) AI와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영역과 능력은 무엇이고, 인간의 진정한 삶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(배움)은 무엇일까요?
 - (세부질문2, AI시대 초·중·고교육) AI 시대, 교육과정, 교과, 수업과 평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?
 - (세부질문3, AI시대 고등·평생·직업교육) 교육과 직업의 연결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, 어떤 배움을 통해 직업을 찾아야 하고 우리 교육체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요?

- (일시/장소) 6.18.(목) 14:30~17:00 서울시교육청 컨퍼런스룸(오프라인)
6.19.(금) 19:30~21:30 온라인
6.20.(토) 10:00~12:00 온라인
※ 폭넓은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같은 활동을 다른 시간대에 3번 진행
- (사전교육) 충분한 학습정보를 제공*하고, 사전 학습 후 활동주제와 관련한 의견을 국참위 게시판에 작성하도록 하여 충분한 숙고의 계기 마련
* 발제영상, 관련 언론기사,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보고서 중 관련 내용 등
- (토의) 모든 참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그룹(10명 이내)으로 토의하고,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그룹별로 퍼실리테이터 배치
- (결과활용) 세차례 토의 결과를 정리하여 본위원회 보고, 미래교육방향과 관련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

□ 7월 활동계획(안)

- (배경)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국정과제인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의 추진
- (활동주제(안))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※ 세부 논의주제 구체화 예정
- (일시/장소) 7월 2~3주 중 예정 / 온라인
※ 폭넓은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같은 활동을 다른 시간대에 2~3번 진행
- (사전교육) 학교시민교육의 개념, 현황, 사례, 주요내용 등 효과적인 토의를 위한 학습자료 제공
- (토의)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전문가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학교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소그룹으로 토의
- (결과활용) 토의 결과를 정리하여 본위원회 보고,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

□ 향후 일정(안)
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6월 활동결과 보고 : 7월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7월 활동결과 보고 : 8월

□ 구성 경과
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 의결 : '26.1.15 (제64차 회의)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「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확정(안) 의결 : '26.2.12 (제65차 회의)
- 「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: '26.2.19
-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 : '26.4.9 (제67차 회의)

□ 국민참여위원회 주요 사항

- (법적근거) 「국가교육위원회법」제16조, 「동법 시행령」 제17조
- (목적)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위해 국교위 소관 사무 추진 시 국민의견수렴 관련 자문 수행
- (규모)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로 구성
- (임기) 2년, 한차례 연임 가능
- (위원자격) 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

□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현황

- 공개모집 332명, 연임 120명, 지방정부 추천 47명, 국민참여위원장 1명 등 성별·연령·지역·직능 균형을 고려한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

성별	남	여	계
인원수	280	220	500
비율	56.0%	44.0%	100.0%

연령	10대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 이상	계
인원수	33	83	71	80	114	119	500
비율	6.6%	16.6%	14.2%	16.0%	22.8%	23.8%	100.0%

지역	서울	경가인천	충청	강원제주	호남	대구경북	부·울·경	계
인원수	51	90	85	54	73	45	102	500
비율	10.2%	18.0%	17.0%	10.8%	14.6%	9.0%	20.4%	100.0%

직능	학생·청년 (16~34세)	학부모	교육관계자	일반국민	지방정부 추천 등	계
인원수	151	138	115	48	48	500
비율	30.2%	27.6%	23.0%	9.6%	9.6%	100.0%

[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]

제17조(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(이하 "국민참여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1.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
 2. 교육·문화·언론·고용·산업·복지·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·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
-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[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]

제8조(운영)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1.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2.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경우
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, 안건명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, 서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지역별, 직능별 등으로 나누거나 필요시 위원 외의 자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계획 등을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위원회 활동 이후에는 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